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19
----------	------

2021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제5차 교육위원회(2021. 9. 8.) 상정·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 1. 제안이유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2. 주요내용

가.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7명 → 9명)

- 교육지원청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0명 → 2명)
- 5급 이하 소계 정원 감원: 감 2명 (6,978명 → 6,976명)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19호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직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정원 중 5급 이하를 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4·5급 정원을 2명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sup>1)</sup>, 정원 책정의 기준은 관할지역의 교

1)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

육행정수요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정원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되어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4급 이상 상위직급의 공무원 비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이하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1] 타시도 일반직 등 공무원 비율 현황

구분	일반직 등 공무원								
	3급	4급	5급 (상당)	소계	6급 (상당) 이하	상위직급 비율			
						3급	4급	5급 (상당)	소계
서울	13	46	324	383	6,583	0.19	0.66	4.65	5.50
부산	8	24	167	199	3364	0.22	0.67	4.69	5.59
대구	7	22	131	160	2390	0.27	0.86	5.14	6.27
인천	6	27	178	211	2960	0.19	0.85	5.61	6.65
광주	5	20	97	122	1532	0.30	1.21	5.86	7.38
대전	5	18	105	128	1632	0.28	1.02	5.97	7.27
울산	6	18	113	137	1501	0.37	1.10	6.90	8.36
세종	3	9	56	68	699	0.39	1.17	7.30	8.87
평균	6.63	23	146.38	176	2582.63	0.28	0.94	5.76	6.99

\* 출처: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2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비교분석 정량분석 자료집'(2021.7.6.)

- 더욱이 정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 이 개정(2020.4.7.)<sup>2)</sup>되면서 교육지원청의 기구는 학생 수가 6만명 이상인 경우 2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

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2)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별표3]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개정전		개정후		비고
구분	국	구분	국	
-	-	가.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신설
가. 인구 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6만명 이상인 경우	2국	나. 인구 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기준하향

는바,

교육지원청의 복잡·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일반직 정원 조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정원 조정은 통상적으로 매년 초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규모에 따라 이루어져왔고 올해도 이미 한 번의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4·5급에 대한 정원을 시급히 조정해야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현재시점에서 2개 교육지원청만에 대해 별도의 직제 변경없이 직급만 변경할 경우 과장 보직 서기관과 팀장 보직 서기관 간의 업무관계, 팀장 보직 서기관과 팀장 보직 사무관과의 업무관계에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더욱이 상위 직급에 부합되는 특별한 직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승진 자리 확보만을 위한 정원 증대로 비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직급을 조정할 경우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직제를 개편한 후 이후에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교육지원청별 인구수 및 학생수 현황

교육지원청	인구수 (기준: 2021.4.)	학교현황(기준: 2020.4.)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동부	730,916	152	2,778	59,435
서부	1,152,501	248	4,749	104,782
남부	1,008,508	223	4,108	85,802
북부	839,995	230	4,564	97,895
중부	500,861	156	2,578	51,580
강동송파	1,126,311	236	5,120	114,730

강서양천	1,029,997	239	4,982	113,637
강남서초	956,111	200	4,434	109,981
동작관악	879,082	171	3,112	66,576
성동광진	635,298	145	2,524	54,958
성북강북	738,904	165	2,988	65,732
본 청				
합계	9,598,484	2,165	41,937	925,10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b>총계</b>	<b>7,627</b>				
<b>정무직 계</b>	<b>1</b>				
교육감	1		1		
<b>일반직 계</b>	<b>7,059</b>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9		28	11	
4·5급	<b>9</b>		7	<b>2</b>	
5급 이하 소계	<b>6,976</b>				
전문경력관 소계	8				
연구사 소계	14				
<b>별정직 계</b>	<b>2</b>				
5급상당 이하 소계	2				
<b>특정직 계</b>	<b>565</b>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